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월별판매액합계표

관리번호

공급자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명)		생년월일	
	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)		

신고내용

월별	업종	품목	품명	수량	판매가액	비고
합계						

위와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5호·제6호 및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를 위와 같이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업종란에는 공급한 기자재가 사용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(예: 농업, 축산업, 임업, 어업).
- 품목란에는 다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.
 - ①비료, ②농약, ③사료, ④유기농어업자재, ⑤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별표 1, 별표 2,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구분
- 품명란에는 기자재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.